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0.)

#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춘 곤]

# 목 차

1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5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와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4조)
- 나.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
- 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률 기준 구체화(안 제22조)
-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 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34조)
- 사.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40조)

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41조)

자.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의 화재보험 가입 신설(안 제4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1. 14. ~ 11. 19.(6일)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와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서는 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아님).
  - 개정안은 법제처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사항을 전부 반영 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업의 명확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7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

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 □ 「행정절차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견제출기한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

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8. 12.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 \*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 \*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 예)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3. 용어의 정의

-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4. 위탁료 산정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 5.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산정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른다.
-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4)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

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천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 7. 위·수탁 계약

###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 함

나. 계약금액 조정

-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

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

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제정이유

- 군내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의2)
  - 1)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 2) 노외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 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 나. 규제개선, 용어순화(안 제8조)
  - 1) 주차요금 미반환규정 삭제
  - 2) 잔여 ⇒ 남은

다.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7호)

1)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부칙)

1) 지원대상 :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

2) 지원범위 :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부칙에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 근거 마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2조의3, 제17조, 제21조의2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상반기 20,000천원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 ~ 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9조제2항제7호)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물리적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휴 주차 공간 활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
  - 법령에 위임된 내용 정비로 필수조례를 적기에 마련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② (생략)

③ 삭제 <1996. 6. 29.>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설치 및 위치, 기능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창포원 운영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별표 1)
  - 1) 개원 및 휴원 : 매일 개원, 필요시 임시로 휴원일 지정
  - 2)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 3)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 무료, 다만 재료비 등은 실비
  - 4) 입장 및 행위제한
  - 5) 편의안전 확보
  - 6) 창포원 내 회의실, 온실 내 체험실 등 시설의 이용 신청
  - 7) 식물의 수량 등 조정

- 8)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 9) 온실 관리 : 병해충 방제, 온도·습도 유지
- 라. 편의시설 운영(제18조~제22조, 별표 1~별표 3)
  - 1) 키즈카페 및 북카페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키즈카페 입장료, 다만 북카페는 무료
  - 3) 카페 위생 관리
  - 4) 키즈카페 입장제한 및 퇴장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44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931백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0. 31.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창포원 운영에 따른 개원 및 휴원, 운영시간, 체험료, 입장 및 행위제한, 편의안전 확보, 시설 이용신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댐 상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연체험 및 관람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하.(생략)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

## 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정비함(안 제10조)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결정
  - 2) 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
- 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1조)
  - 1)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반액 감면
- 다. 임대료 반환대상 확대(안 제12조)
  - 1) 계약 만료일 전 농업기계 반납 :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중복·재기재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7조)

제1호·제22조제3항)

1) 임대계약 취소, 농기계관리대장, 위원회 수당

마.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9조)

1) 삭제 :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심의

2)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만을 심의 하도록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

바. 그 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 ~ 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2019. 6. 25.) 되었으며,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상위법령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업무 담당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미 이행으로 지적이 예상됨.
  - 현재 경남에도 합천, 창녕, 하동 등에서도 추진 중이며, 다른 시군은 2020년 기준안으로 한 번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기존 조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료는 상위법 임대료 기준의 35~87%선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군은 단계적 인상을 계획(2020 : 70% ~ 65%, 2021 : 85% ~)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군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평가 우수 군으로 2018년 국비 1억, 2019년 국비 1억 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0년 동부권역 신설사업에서는 3억원의 국비를 받게 됨.
  - 본 조례안 개정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건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6. 3. 7.
<p>• <b>질의요지</b>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p> <p>• <b>의견</b>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b>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조례로 추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b>, 또한 계약 해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p> <p>• <b>이유</b>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함)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안 조례 개정안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처럼 조례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 여부와,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시됩니다.</p> <p>첫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시 조례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p> <p>「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또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본 사안 조례 개정안에서와 같이 위탁계</p>					

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취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본 사안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는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해 위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5. 7. 22 회신 15-0425 해석례 참조),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적용되므로, 이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서 그 사유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해제·해지 사유를 정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것에 더하여 조례에서 독자적인 계약 해지사유를 추가로 정해놓고 그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상위법령보다 더욱 침익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운영기간 도중에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을 취소할**

경우, 사실상 계약상대방(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추가적인 계약 해지사유를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생략~

## 관련법령 발췌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 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

다. <신설 2016. 2. 11.>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2조의6에서 이동 <2019. 6. 25.>]

[별표 1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 2019. 6. 25.시행 2020.1.25.>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pm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pm 1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업기계 관리대장

(앞쪽)

관리번호 :	
형 식 명 :	
규 격 :	
제 조 번 호 :	

\* (작성예시) 관리번호: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형식명: JK-MS800  
 규격: 0.6(1.17)  
 제조번호: 11-879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	년 월 일	이전·폐기 일자	년 월 일
제조회사 · 구입처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사 진	
임대 농업기계	관리번호 명판



## □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심의
  - \* 심의사항 중 임대농기계 선정과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을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대상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현행)

구 분	규 격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 고
기종 및 작업기	콩정선 작업기 사용료	-	500원	콩1포당 (40kg기준)
	자주 및 부착형	100만원 미만	5,000원	
	”	100만원 ~ 400만원 미만	10,000원	
	”	400만원 ~ 1,000만원 미만	20,000원	
	”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30,000원	
	”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50,000원	
	”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0,000원	
	”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80,000원	
	”	5,000만원 이상	100,000원	

거창군 농업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개정이유

-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에서 농기계 수리 시에 드는 부품대금의 무상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농기계 수리 시 부품의 무상공제 금액 상향조정함(안 제6조)
  - 1) 10,000원 ⇒ 30,000원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 1) 소요되는 ⇒ 드는, 당일 ⇒ 그 날
  - 2) 각호 ⇒ 각 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4호서식)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시에 드는 부품대금의 무상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한 것으로

- 도내 농기계 부품 무상공제 금액은 10,000원 ~ 70,000원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상공제 금액이 저조한 실정임.
- 무상공제 금액 상위기준(50,000원~70,000원)으로 조정 시 관내 농기계 수리업체의 영업상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농기계 수리대상을 소형(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기계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리업체의 영업지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30,000원)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 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거.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나. (생략)

[시행일 : 2019.12.25.] 제9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 2.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49.9퍼센트인데 비해 거창군은 5.3퍼센트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임에 따라 공공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함(안 별표 1)
  - 1) 요금 인상률 :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 5.3퍼센트 → 5.76퍼센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지방공기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4. ~ 10.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은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3퍼센트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임에 따라 공공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경영수지 및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5년간 매년 15%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용자 부담을 고려 2020.1.1.부터 15% 인상만 가결(2019년은 동결)
- 공기업 재정건전화 및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향후 다년간 순차적으로 요금인상과 조정량 확대 등 처리원가 절감 등이 추진 되어야 할 것임.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하수도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 7. 9, 일부개정]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